



1899-0001

예약상담시간 평일 08:30~18:00 토요일 08:30~12:30

www.emc.ac.kr

EMC 대전을지대학교병원
EMC 노원을지대학교병원
EMC 강남을지대학교병원
EMC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진료기록 사본발급 Q&A

Q. 만 14세 미만 환자의 조부모가 사본발급 요청 시 환자 부모(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A.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서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므로, 조부모의 경우 위 친족에 해당하여 친권자(부모)의 동의 없이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환자는 미성년자로 신분증이 없으므로 환자 신분증 사본을 구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열람 요청인(조부모) 신분증
2. 친족관계 확인서류

Q. 환자가 군복무, 해외체류, 수감 중일 경우 대리인 및 친족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방법은?

A. 자가 군복무, 해외체류, 수감 등 동의서 및 위임장 원본을 제출하기가 곤란한 상황일 경우에는 근거서류와 자필 서명한 동의서(위임장 포함)를 팩스나 스캔한 파일을 출력한 형태로 제출하면 됩니다.
※ 단, 서류 위조의 경우에는 위조한 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 - 형법 제231조, 서명 위조 - 형법 제238조)

Q.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사본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A. 아래 서류를 구비한 후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1. 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Q. 환자 본인인데 오늘 신분증을 안 가져왔어요. 사본발급이 가능한가요?

A.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는 신분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사본발급이 불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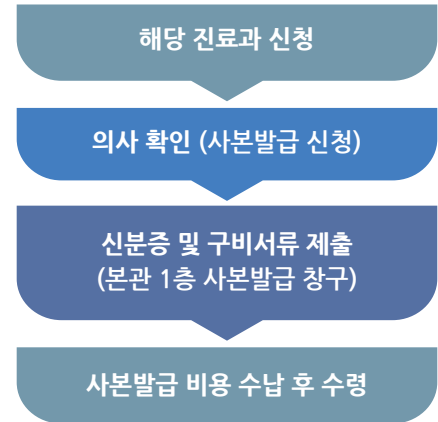
원무부
Administration

진료기록
사본발급



EMC 을지대학교의료원

01. 발급 절차



02. 관련 법규

- 의료법 제 21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
- 의료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가-5

03. 발급 비용



※ 영상검사 및 특수검사의 이미지(사진) 등을 저장매체로 발급 시 비용은 별도 산정됩니다. 단, 사본발급을 위한 의사 면담 시 진료접수비는 받지 않습니다.

환자의 동이가 가능한 경우

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환자 본인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① 환자 본인의 신분증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① 환자 본인의 신분증 (학생증, 여권 등)
	만 14세 미만	①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친족 <small>-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small>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①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②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③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④ 친족관계 증명서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①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학생증, 여권 등) ②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③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④ 친족관계 증명서
	만 14세 미만 (법정 대리인만 가능)	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 * 환자의 법정대리인 이외는 제3자인 환자대리인으로 규정
환자 대리인 <small>- 형제 - 자매 - 보험회사 등</small>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①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②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③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④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①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학생증, 여권 등) ②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③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④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 14세 미만	①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②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③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④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⑤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① 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① 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 서명이 불가함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① 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① 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법원의 금지선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해외체류, 수감 중인 경우	① 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군복무 중인 경우	①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②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③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⑤ 병적증명서(동사무소, 병무청 발급) 또는 복무확인서(부대 발급)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첨부되어야 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 서명 시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친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과 관계가 명시되어야 함.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의료법 제 13조의 3))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을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진료기록 열람 및 발급지침

진료기록은 비밀문서입니다. 진료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 병력 및 가족력과 주된 증상, 진단결과 및 치료 등에 관한 모든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진료기록 내용은 비밀기록이므로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으며, 진료기록의 비밀 유지를 위해 엄격한 절차에 의해 발급되고 있습니다.

환자 외 모든 제3자는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이외에는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구비서류 안내

- 동의서에는 환자 본인과 신청인의 인적사항, 열람 및 사본발급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위임장에는 수임인과 위임인의 인적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진료기록 사본발급 시, 신청인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므로 신청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내원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없는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의료법 제 13조의 3)

-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동의서와 위임장은 노원을지대학교병원 홈페이지(<http://www.eulji.or.kr>) 대전을지대학교병원 홈페이지(<http://www.emc.ac.kr>) 혹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